

의안 번호	948
----------	-----

##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2. 11. 12.(월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회부 : 2012. 11. 13.(화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2. 11. 30.(금)

### 2. 폐지이유

- 가.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나,
- 나. 「수도법」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광역시장이 하도록 개정(2012. 1. 29. 시행)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「수도법」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이 2012. 1. 29. 개정되어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권한이 울산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「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 폐지

### 4. 근거법령

「수도법」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

### 5. 검토의견

2012. 1. 29 「수도법」 제47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이 개정되어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권한이 울산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